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연월일 : 2009. 05. 25.
제 출 자 : 함명섭의원외 5인

1. 주 문

가.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나. 심사기간은 2009년 06월 01일 1일간으로 한다.

2. 제안이유

가. 평창군수가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.

3. 참고사항 : 없 음

심 사 계 획

1. 활 동 목 적

○ 심도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

○ 신속한 의사진행

2. 심 사 안 건

○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

○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

○ 평창군 재래봉 보존·육성에 관한 조례안

○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○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

○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워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·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

○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

3. 활 동 기 간

○ 2009년 06월 01일 1일간으로 한다.

4. 구 성

○ 최귀녀의원, 이만재의원, 유인환의원, 함명섭의원, 심재국의원, 김진석의원

5. 운 영 계 획

일 시	차 수	내 용	비고
06.01 (월)	제1차 조례특위 (13:30)	1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.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. 평창군 재래봉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안 4.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. 평창군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. 평창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. 평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. 평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. 평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. 평창군 노동계곡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	